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44호

**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
지정(변경) · 지구계획 승인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
결정(변경) · 지형도면 고시**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44호(2019.10.17.)로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승인된 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 및 제28조, 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(변경) 및 지구계획 승인(변경)하고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, 제28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또한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344호(2019.10.17.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5호(2019.10.17.)로 사업계획 승인된 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18일
서울특별시장

I.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

1. 촉진지구의 명칭, 위치 및 면적(변경)

- 명 칭: 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(변경없음)
- 위 치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-1번지 일원(변경)

명칭	면적(㎡)				비고
	기정	변경		변경후	
		제척	편입		
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역세권 청년주택 (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	5,663	감)16.605	증)16.605	5,663	휘경동 281-1번지와 연결필지인 휘경동 280-2번지 간 동일면적(16.605㎡) 토지교환 (※면적변경없는 공급촉진지구 경계 변경)

■ 변경사유 : 공급촉진지구 경계의 정형화 및 망우로변 일체화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

- 면 적: 5,663㎡(변경없음)

- 2. 촉진지구의 지정일(변경없음)
- 3. 사업의 종류(변경없음)
- 4. 시행자의 명칭,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(변경없음)

5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명칭), 주소(변경없음)
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 : [붙임]
7.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: 서소문 2청사 14층 주택공급과(02-2133-6291)와 동대문구청 4층 건축과(02-2127-4795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

II.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

1. 지구계획의 개요

- 명 칭 : 동대문구 휘경동 281-1 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(변경없음)
- 위 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-1번지 일원(변경)
- ※ 휘경동 281-1번지 및 휘경동 280-2번지 간 토지교환에 따른 공급촉진지구 경계 변경(면적변경 없음)
- 면 적 : 5,663㎡(변경없음)
-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(변경없음)

3.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(변경없음)

4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
5. 인구·주택수용계획(변경없음)

6. 교통·공공·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7.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(변경없음)

8.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(변경) : [붙임]

[붙임]

1. 도시·군관리계획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

가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나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(변경) : 별첨 참고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

가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

(1) 용도지역 결정 조서(변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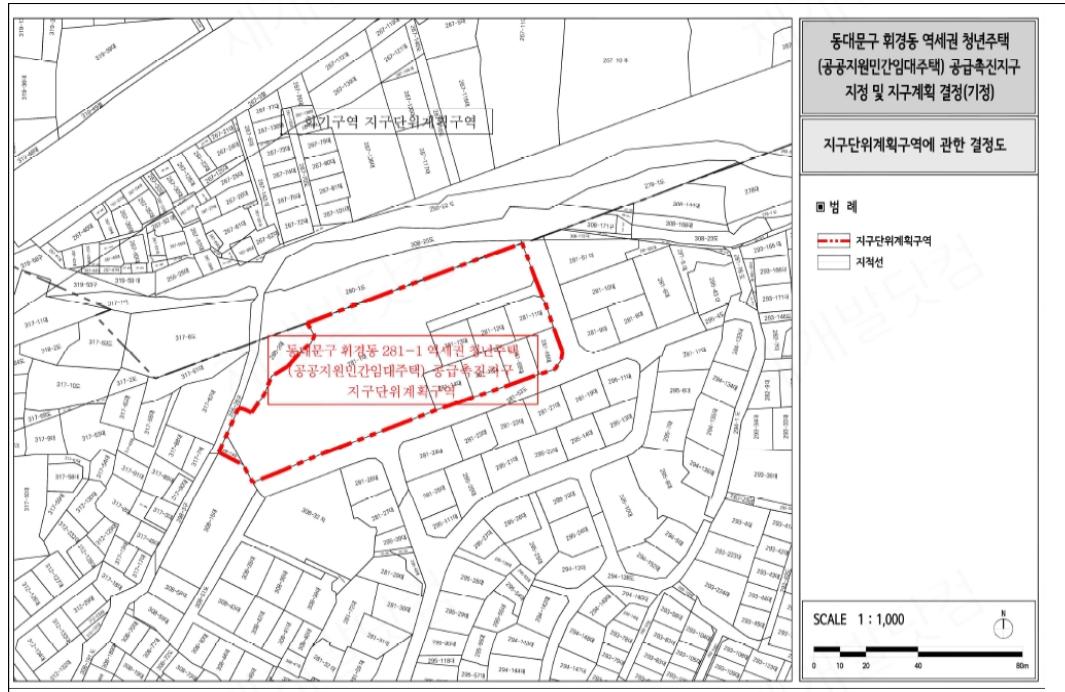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사유서(변경)

위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비고
	기정	변경		
휘경동 281-1	준주거지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16.605	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으로 용도지역 환원
휘경동 280-2	제3종 일반주거지역	준주거지역	16.605	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으로 용도지역 변경

- (2) 용도지구 결정(변경없음)
- (3)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도 : 게재생략
- 나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- 다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 - (1)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없음)
 - (2) 획지에 관한 결정도(변경) : 게재생략
- 라) 건축물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- 마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없음)
- 바) 공공기여 계획(변경없음)
- 2.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(해당없음)
- 3. 방재계획 (변경없음)
- 4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·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(변경없음)
- 5.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6.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- 7.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

[별첨]

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(기정) 〉



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(변경) 〉

